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개정 산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1조~제5조 (생략)	제1조~제5조 (현행과 같음)	
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배정한다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생략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최종 배정월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25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 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20억원)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3항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일부 초과하여 전액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해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반지원한도를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-특별지원한도 지원기간 연장</p> <p>-특별지원한도 지원비율 상향 조정</p> <p>-지원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업체당 배정한도를 상향 조정</p>
제7조~제14조 (생략)	제7조~제14조 (현행과 같음)	
<p>< 신 설 ></p>	<p>부 칙 <2019. 8. 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-부칙 신설</p> <p>-시행일 명시</p> <p>-경과조치 마련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별표1>~<별표4> (생략)	<별표1>~<별표4> (현행과 같음)	
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 (생략)	<별지 제1호 서식> ~ <별지 제6호 서식> (현행과 같음)	